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610 발의연월일: 2022. 1. 27.

발 의 자:정청래·김남국·김승남

김용민 · 박영순 · 양경숙

오영환 · 오영훈 · 윤건영

이상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갓 두 살 된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등 최근 5년 간(2016~2021. 3)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이 아닌 빚을 떠안아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달하는 것으로확인됨.

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대물림 된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, 또는 빚에 쫓겨 도망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함.

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사망 시 상속을 자동으로 한정승인하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에만 빚까지 상속할 수 있도록 해 의지와 상관없는 빚 대물림을 막고자 함(안 제101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된 때부터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며,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승인 또는 포기할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019條(承認, 抛棄의 期間) ①	第1019條(承認, 抛棄의 期間) ①
相續人은 相續開始있음을 안	
날로부터 3月內에 單純承認이	
나 限定承認 또는 抛棄를 할	
수 있다. 그러나 그 期間은 利	
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	
依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延長	
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미성년자인 상속인</u>
	의 경우 상속개시 된 때부터
	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며,
	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의사에
	따라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
	<u>다.</u>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